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84
----------	------

발의연월일 : 2020. 10. 12.

발 의 자 : 권인숙 · 심상정 · 윤미향
용혜인 · 장혜영 · 유정주
이은주 · 양이원영 · 이수진^(비)
류호정 · 정춘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 상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 내지 허용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음성적 낙태시술로 인해 여성에게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그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던 것이 우리의 법현실이었음.

2018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여성(10,000명)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되었고, 인공임신중절 사유

(복수응답)도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의 지장’(33.4%), ‘경제적 어려움’(32.9%), ‘자녀계획 문제’(31.2%)가 높게 나타났음. 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대해 응답자의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따라서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하여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하여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신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제7호).

나. 모자보건사업에 재생산건강 관리와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지원을 포함함(안 제2조제8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

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라. 모성 등의 의무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마.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상담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지역재생산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7조의2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피임·성교육 실시,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상담 지원,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등 국민의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사. 임산부가 충분한 정보 및 상담을 토대로 인공임신중단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임산부가 인공임신중단을 결정한 경우 의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자. 의사는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정보를 임산부의 연령, 임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되, 의사가 설명한 정보의 이해와 임산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사 또는 임산부가 신뢰관계자의 조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제5항 신설).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의료

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3 신설).

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28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를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로, “배출시키는 수술을”을 “배출시켜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을 “재생산건강 관리와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양육”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를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전후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모성의 생식건강”을 “재생산건강”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생산건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등과 관련된 보건 의료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재생산건강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상담전화의 운영
2. 제2항에 따른 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 지원 및 종사자 교육
3. 임신·출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지원 및 재생산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는 관할 구역의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재생산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및 상담·심리 지원
4. 그 밖에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생산건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을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을 “피임, 임신·출산,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재생산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임교육 및 성교육의 통합적 실시 및 홍보
2.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상담 지원
3.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재생산건강 증진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① 임산부는 인공임신중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임산부는 제1항의 판단과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판단과 결정을 하는 임산부에게 특정한 선

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사는 임신부에게 인공임신중단의 방식, 상담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임신부가 인공임신중단을 결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하여야 한다.

⑤ 의사는 제4항에 따른 정보를 임신부의 연령,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되, 의사 또는 임신부가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이해와 의사결정 과정에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신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3(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의3,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3의2. 제7조의2에 따른 중앙재생산건강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수행 경비

3의3.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제25조제2항 중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관한 업무를”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중앙재생산건강지원센터의 운영
 2.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 제2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 <u>인공임신중절수술</u> ”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u>배출시키는 수술</u> 을 말한다. 8. “ <u>모자보건사업</u> ”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u>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u>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 12. (생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②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u>인공임신중단</u> ----- <u>약물</u> <u>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u> <u>으로</u> ----- ----- <u>배출시</u> <u>켜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를</u> -- -----. 8. ----- ----- ----- ----- <u>재생산건강 관</u> <u>리와 임신·출산, 인공임신중</u> <u>단, 양육</u> ----- ----- ----- -----. 10. ~ 12.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u> <u>국민이 피임, 월경, 임신·출산,</u> <u>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u>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
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
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
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
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
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
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산부의 산전(産前)·산후
(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

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삭 제>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① -

-----.

-----.

1. ----- 임신·출산, 인공임
신중단 전후 관리 -----

급처치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u>모성의 생식건강</u>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② · ③ (생 략) <u><신 설></u>	----- 2. (현행과 같음) 3. <u>재생산건강</u> ----- ----- -----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7조의2(재생산건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u>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중앙재생산건강지원센터</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u>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상담전화의 운영</u> 2. <u>제2항에 따른 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 지원 및 종사자 교육</u> 3. <u>임신·출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u> 4. <u>그 밖에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지원 및 재생산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u>
--	--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는 관할 구역의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재생산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및 상담·심리지원

4. 그 밖에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관련 서비스 연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생산건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생산건강 증진 사업 등)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① -----
-- 피임, 임신·출산,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교육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재생산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임교육 및 성교육의 통합적 실시 및 홍보
2.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상담 지원
3.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재생산건강 증진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인공임신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① 임신부는 인공
임신중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
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임신부는 제1항의 판단과 결
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및 상
담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판단
과 결정을 하는 임신부에게 특
정한 선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사는 임신부에게 인공임신
중단의 방식, 상담 및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임산부가 인공임신중단을 결정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
중단을 하여야 한다.

⑤ 의사는 제4항에 따른 정보를
임산부의 연령,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
하되, 의사 또는 임신부가 제4
항에 따른 정보의 이해와 의사
결정 과정에 조력이 필요하다고

<u><신 설></u>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4. ~ 9.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	<u>판단할 경우 임신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u> <u>제14조의3(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공임신중단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7조의2에 따른 중앙재 생산건강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수행 경비</u> <u>3의3.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재 생산건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경비</u> 4. ~ 9.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제3호의3, 같은 항 제 <u>4호</u>-----
---	--

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 1. 제7조의2에 따른 중앙재생산 건강지원센터의 운영 2.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삭제>
---	--